



대구대학교 · 대구FC 엔젤클럽
상호협력 업무 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대구FC 엔젤클럽은 대구FC프로 축구단의 모범적인 발전과 시민구단으로서의 흥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대구FC엔젤클럽”과 “대구대학교”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대구FC 프로 축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 및 기간)

1. “대구대학교” 교수, 직원, 학생들은 협약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한다.
 - 가. 대구FC 프로 축구단 응원을 위한 회원 모집과 홈 경기 시 응원단 지원에 협조 한다.
2. “대구FC엔젤클럽”은 “대구대학교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한다.
 - 가. 홈경기 입장권 및 응원도구 제공
 - 나. 엔젤 행사 지원요원에 대한 편의제공
3.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
4. 위 협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해지 또는 연장불원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연장된 것으로 한다.
5.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제3조(협약내용 홍보) “대구대학교”는 교수, 직원, 학생들에게 “대구FC 엔젤클럽”은 전 회원에게 협약내용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약내용의 변경) 필요한 경우 본 협의 내용을 상호 서면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1.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담당자 변경 시 협약 내용에 대한 인수·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.
2.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고 당해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협약상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과 해지)

1.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고가 있는 경우 해지하며, 상대방이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한다.
2. 어느 당사자도 본 협약의 합의해지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하여 다른 상대방에 끼친 손해나 손실 기타 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
본 협약은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0월 12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홍덕률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Angel Club

회장 이호경

이호경

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
(만촌동, 호텔 인터불고 대구)